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1 선고 2019가단5205650 판결 [(일부판결) 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

담당변호사 임부영

피 고 1. 주식회사 A

2. B

변 론 종 결 2021. 3. 18.

판 결 선 고 2021. 4. 1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5,852,248원 및 그 중 64,199,829원에 대하여 2019. 7. 11.부터 2019. 11. 7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지연손해금을 최종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5%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가. 피고 주식회사 A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B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3. 일부기각

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'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호 제1항 본문의
법정이율에 관한 규정'에 따라 2019. 6. 1.부터 법정이율이 연 12%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
부분은 기각함

판사 이종엽

별지